한의의 미래, 의료의 미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수 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 목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에 따른 분회 회원 및 임직원 참여 요청

---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3-03-0065 (2023.03.13.)
3. 우리 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2.12.22.)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준비 중입니다.
4. 동 토론회는 한의약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한의계의 높은 관심과 개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바, **귀 분회 소속회원 및 임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석자를 첨부 양식에 의거 2023. 3. 16.(목) 17:00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회명 : (가칭)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 3. 23.(목) 10:00~12: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B1)

○ 참석요청자 : 최소 5인이상(분회별)

※ 상세내용은 첨부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계획(안) 1부.
2. 참석자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

부장 윤상환 처장 김태준 협조

서한의 – 제 420 호 (2023.03.13.)

우)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6층 / 홈페이지 : https://www.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

□ 첨부 1.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안)

❑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00~12:00

○ (장　　소) 국회도서관 강당(B1)

○ (참석대상)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의약단체 관계자 등 300명

○ (주　　최) 서영석의원실, 이종성의원실

○ (주　　관) 대한한의사협회

○ (후　　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30분)	접수 및 등록	등록
10:00~10:20 (20분)	개회식 - 환영사,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기념촬영 등	개회식
10:20~10:25 (05분)	좌장 인사 및 소개 - 좌장 :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송호섭	
10:25~10:45 (20분)	발제 1.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 - 발제자 : 송 범 용 /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주제 발표1
10:45~11:05 (20분)	발제 2.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 발제자 : 이 은 용 /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주제 발표2
11:05~11:10 (5분)	휴 식	자리배치
11:10~11:20 (10분)	토론 1. - 토론자 : 백유상 /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토론
11:20~11:30 (40분)	토론 2. - 토론자 : 문영춘 /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11:30~11:40 (05분)	토론 3. - 토론자 : 육태한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11:40~11:50 (10분)	토론 4. - 토론자 : ○○○ / 보건복지부 ○○○ 과장	
11:50~12:00 (10분)	질의응답	
12:00~	폐회	

※주제 및 발제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22.12.22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점검 필요

○ 의료법의 목적과 대법원의 판결의 의의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있는 바, 동 목적을 위한 한의 보장성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토론회 주요일정 진행 및 계획사항

○ 3. 13. ~ 15. 토론회 참석자 확인 및 축사 요청 등

○ 3. 16. ~ 17.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제작

○ 3. 17. 자료집 제작 ※ 축사 및 원고 16일 마감

○ 3. 20. 참석자 최종 확인 등 토론회 최종 점검

○ 3. 23. 토론회 개최

❑ 주요 참석자 현황 및 진행사항

구분	소속		성명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환영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좌장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발제자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
토론자	한국한의약진흥원		백유상 기획협력실장
	대한한의사협회		문영춘 기획이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보건복지부		○○○ 과장
주최	서영석의원실, 이종성의원실 공동주최		
주관	대한한의사협회		

□ 첨부 2.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 명단

(분회명 :)

연번	성명	직위	근무처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분회사무국 직원 참여여부도 상기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